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00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안호영·박희승·이병진

이학영 · 이원택 · 박 정

김주영 • 어기구 • 주철현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 권 유통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한정하는 현행규정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	②			
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2			
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u>경</u>	<u>경</u>			
<u>우</u> <단서 신설>	<u>우.</u> <u>다만, 농업인의 영농과 생</u>			
	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소매			
	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			
	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